

아동학대 체크리스트

연번	체크항목	체크란	
1	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.	☐	☐
2	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.	☐	☐
3	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.	☐	☐
4	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,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.	☐	☐
5	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, 억제,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.	☐	☐
6	기아, 영양실조,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.	☐	☐
7	계절에 맞지 않는 옷,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.	☐	☐
8	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.	☐	☐
9	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.	☐	☐
10	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.	☐	☐
11	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.	☐	☐
12	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.	☐	☐
13	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, 집(보호기관)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.	☐	☐
14	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.	☐	☐
15	"아동학대 체크리스트" 1~14번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	☐	☐

- ☑ "아동학대 체크리스트"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.
- ☑ 1개 문항 이상 "예" 라고 체크된 경우,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.
- ☑ 아동학대가 "의심"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이지킴이112 모바일 앱

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이지킴이 112 모바일 앱

1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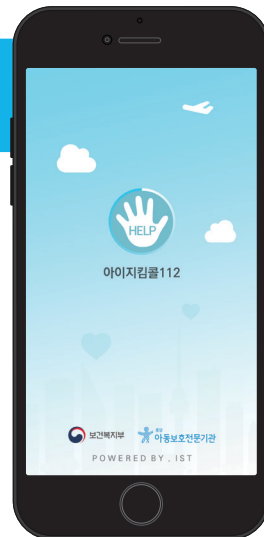
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강화 및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알리고 국민의 인식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함께 제작한 모바일 앱입니다.



아이폰용



안드로이드폰용



본 안내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
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안내서

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아동 및 가족,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·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112



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



경찰청



아동보호전문기관

HYUNDAI MOTOR GROUP

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
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/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/ 신고요령
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정의 및 역할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

-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.
-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'의심 및 발견'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.



신고의무자의 범위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

법률명(약칭)	신고의무자	법률명(약칭)	신고의무자
아동학대처벌법	·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·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(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)	영유아보육법	·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·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
아동복지법	· 아동복지전담공무원 ·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	유아교육법	· 교직원 · 강사 등
가정폭력방지법	·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·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	초·중등교육법	· 교직원 · 전문상담교사 · 산학겸임교사 등
건강가정기본법	·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	학원법	· 학원의 운영자· 강사· 직원 · 교습소의 교습자· 직원
다문화가족 지원법	·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	의료법	·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· 의료기사
한부모가족 지원법	·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	청소년기본법	· 청소년시설 ·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
사회복지사업법	· 사회복지전담공무원 ·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	청소년보호법	· 청소년 보호· 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
성매매피해자 보호법	· 지원시설 ·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	장애인복지법	·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로서 시설 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· 치료·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성폭력방지법	·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 시설의 장과 종사자 ·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	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	· 정신건강복지센터 · 정신의료기관 · 정신요양시설 ·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
소방기본법	· 구급대의 대원	아이돌봄 지원법	· 아이돌보미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	·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	입양특례법	· 입양기관의 장과 종사자

신고자 보호조치 내용

- 아동학대처벌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,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고, 동시에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
- 구체적인 예시**
- 신문이나 TV 등의 보도를 통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경우
 - 수사기관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 말하거나 언론에 누설하는 경우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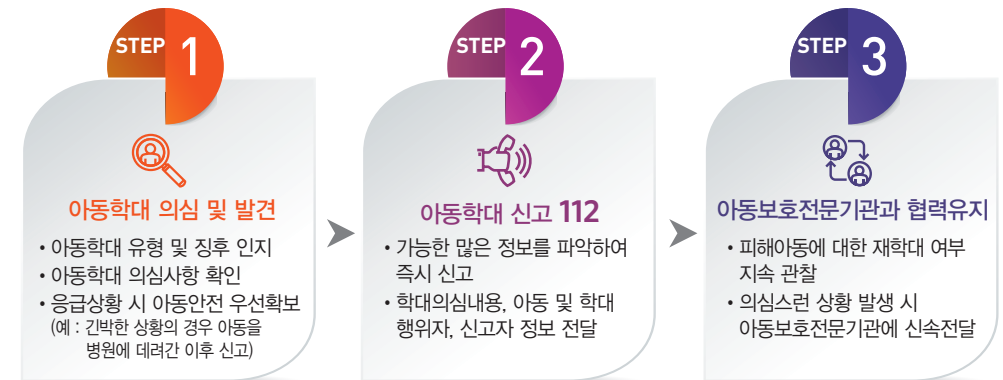
-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(수사기관 포함)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신고의무 불이행

-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,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과태료 금액		
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150만원	300만원	500만원

아동학대 신고요령



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

신체학대

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

-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
-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(지속적으로 학대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)
-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
- 담배 불 자국, 뜨거운 물에 데인 화상자국
- 겨드랑이, 팔뚝 안쪽,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
-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
-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

정서학대

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폭력, 정서적 위협, 감금, 억제, 기타 가학적인 행위

- 수면부족으로 인한 후유증
- 언어장애, 비행, 기행(퇴행, 반사회적 행동 등)
-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
- 특정물건을 뺏고 있거나 물어뜯음
- 행동장애(반사회적, 파괴적 행동장애)
-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
- 극단행동, 과잉행동, 자살시도

성학대

성인이 아동에게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활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

- 겉거나 앉는데 어려움
-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,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
- 타인, 동물,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
- 위축, 환상, 퇴행행동
-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
-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
- 찢거나 손실된 치녀막
- 침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
-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
- 성병 감염 및 임신

방임 및 유기

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

-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
- 비위생적인 신체상태
- 계절에 맞지 않는 옷
- 머릿니, 빈대, 회충 등이 있음
- 약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
- 예방접종과 치료 불이행, 건강상태 불량
-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
- 지속적 피로·불안정감 호소, 수업 중 조는 태도
- 도벽 등의 비행행동